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9. 3. 21. (목), 10:00 ~ 12: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	3
---	---------------------------------	---

【보고사항】

2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재신청 사전자문」 추진 보고	11
3	국가민속문화재 민속마을 제도 개선 추진 보고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	14

심 의 사 항

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

가. 제안사항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고분군」은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김해·함안 가야고분군」과 「고령 대가야 고분군」으로 각각 등재되었으며, 2015년 3월 우선등재 추진대상 선정 당시 두 잠정목록을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의결됨
-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5차 회의(2017.12.15.) 심의 / <보류>
 -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들을 추가할 것
 - OUV 보완, 신청기준 재서술, 국내외 비교연구 심화, 완전성 재서술, 보존 관리계획 구체화 등 등재신청서에 대한 전반적 보완 검토
-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4차 회의(2018.12.21.) 심의 / <보류>
 -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위원회에서 추후 재심의함(3월 이내)
- 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기에 심의 상정함

다. 진행경과

- 대상유산 : 「가야고분군」(총 7개 지역 고분군)
 - 구성유산 :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추진 경과
 - 문화재위원회 의견에 따라 구성유산 재구성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18.3월 ~ 4월)
 - * 제1/2/3차 토론회 (18.3.7 / 18.3.21 / 18.4.25)
 -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최종 고분군 확정, 지자체 추진단 MOU 체결('18.8.28.)
 - 세계유산센터에 「가야고분군」 7개 유산을 포함하는 잠정목록 등록('19.1.28.)
 - 가야고분군 등재추진단을 중심으로 등재신청서에 대한 전반적 보완 검토 진행

라. 등재신청 후보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 후보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신청 내용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가야고분군」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추진단 설명자료(붙임)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가야고분군(Gaya Tumuli)
- 구성유산 :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유산구역 : 유산구역(235.39ha), 완충구역(1,952.839ha)
- 등재신청기준
 - 기준(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신청 유산은 1~6세기에 조성된 가야의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고분의 입지와 규모, 배치방식, 묘제의 변화, 부장유물을 통해 고대 도시 국가의 형태를 띤 가야 소국연합체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보여 주며, 고대 동북아시아 사회의 국가 발전과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물질적 증거이다.

고대 도시국가의 형태를 띤 가야 각국은 유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않고 약 600년간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하였다. 해로와 수로, 육로로 연결된 분지를 배경으로 조성된 7개의 가야고분군은 상호 교류하면서 성장한 가야문명의 독특한 사회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 등재 기준의 타당성

신청유산은 고분의 입지와 경관, 묘제의 변화, 배치방식, 부장유물, 순장 등을 통해 가야 문명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전 과정 및 가야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독보적인 물적 증거이다. 남해안과 낙동강의 교통로를 따라 발달한 가야 각국은 대등한 수준의 여러 정치체가 상호 교류하면서 성장한 가야의 독특한 사회 구조를 보여 준다.

가야고분군은 규모와 배치관계, 부장유물, 순장을 통해 사회신분질서를 반영한다. 7개의 가야고분군은 가야 각국의 왕과 지배층을 위해 조성된 고분군으로 가야의 성립과 발전, 멸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 완전성에 대한 기술

7개의 가야고분군은 가야 각국의 중심지에 입지하며, 가야문명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그 전부가 유산에 포함되어 있다. 7개의 가야고분군은 입지와 경관, 규모, 묘제, 부장유물을 통해 가야사회의 구조변화를 온전하게 보여준다. 주변에 남아있는 토성과 교통로는 가야 각국의 중심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완충구역 내에 포함되었다.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다.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고분군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유산은 개발이나 방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주변 경관과 함께 효과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 진정성에 관한 기술

신청유산은 고고학적 유적으로 1910년대부터 진행된 과학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구조가 밝혀졌다. 지하에 축조된 고분군은 1,500년 이상 그 진정성을 위협받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도시의 확장으로 고분군이 조성된 구릉지 일부가 손상되기도 하였으나 고분군의 원상은 잘 유지되고 있다.

7개의 가야고분군은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입지와 주변 환경, 정신과 감정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야고분군은 주민들에게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식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유산을 보존하고 학술 연구를 진행하며, 시민 홍보를 위해 고분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유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야고분군의 구성요소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과 「나라 문서」에서 규정된 진정성의 조건을 만족한다.

마.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19. 3. 19.(화) 11:00 / 대전역 KTX 회의실
- 검토자 : ○○○, ○○○, ○○○
- 검토의견(요약)

- * 이전 신청서와 비교하여, 지적되었던 검토의견을 잘 보완하여 신청서의 체계가 갖춰졌으며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었음. 다양한 이미지를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였고,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산의 보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 그러나 다른 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가야고분군의 특성과 가치를 도출하고, 도출한 가치를 근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가야고분군이 사라진 가야 문명의 유일한/독보적인 증거임을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 같은 내용(문장)이 반복되는 점은 수정할 필요 있음

* (설명)

- 대상 유산의 중요한 특징과 유산의 생성부터 발전 과정까지의 내용, 유산의 현재 상태와 보존 이력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음. 그러나 유산을 구성한 주요한 요소인 묘제의 변화에 대한 기술 내용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유산의 성립·발전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었으나 소멸의 내용은 매우 간략하여 전체적인 내용의 통일성이 부족함.
- 유산 내용 설명시 반복 기술과 표면적 현상 위주의 설명을 지양하고, 신청 유산이 사라진 가야 문명을 증거한다는 등재 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가야에 대한 설명 보완과 유산이 지니고 있는 문명사적 특징 설명이 필요함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정당화)

- 기술의 분량은 적절함. 유산의 전체적인 요약 및 연속유산을 구성한 각 유산의 개요는 간략하게 종합하여 기술되었으나, 유산의 가치에 대한 기술은 다소 부족함
- 가야고분군을 통해, 사라진 '가야'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가야고분군이 (iii)번 기준에서 요구하는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인지에 대한 논거와 내용을 동아시아 또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 (비교연구)**

- 자료의 양은 충분하나, 가야고분의 시기와 구조적 특징, 출토유물 등에 대한 서술이 필요함. '철의 왕국'이라 할 만큼 철기유물이 제작 유통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대외교류 면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인 내용과 함께 외부로 전파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술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 고구려·백제·신라, 중국·일본과의 비교에서 가야만의 특징을 조금 더 도출하여야 함. 예를 들면, 가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최고지배층과 그 하위계층이 한 묘역과 매장되어 묘역을 달리하지 않으나 무덤 내부의 순장, 부장유물을 통해 위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7개 고분군이 서로 영향이나 통제에 있지 않고 각각 자유롭게 축조되는 양상이, 중앙과 지방이라는 관계 속에서 무덤의 규모 등이 중앙과 차별화되는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음

*** (유산구역/완충구역 설정과 완전성)**

- 유산구역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표현할 수 있게 잘 구획되어 있으며, 완충구역에는 인접 환경 및 주요 경관, 유산의 보호가 가능한 지역을 모두 포함하였고 유산과 연계된 고고학적 유적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연구를 통해 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 유산과 완충구역의 정확한 경계선이 표시된 지도, 완충구역의 면적, 특성, 용도 제한 현황, 법적 보호구역 경계 등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 다만 완충구역 중 옥전고분군과 지산동고분군의 경우 교통로로서의 하천이 완충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유산은 그렇지 않아 통일성이 결여되었음. 고성 송학동 고분군 구성요소가 6개에서 5개로 감소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의 경우 북쪽 구릉을 포함하여 고분군의 경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진정성)**

- 기술이 많이 보완되었음. 연속유산을 구성하는 각 개별 유산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어 규모면에서는 충분함. 그러나 형태와 디자인의 경우 유산이 조성 당시의 경관과 내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와, 정비 및 복원이 이루어졌을 경우 본래의 모습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함
- 고성 송학동고분군의 경우 개발에 의해 유산의 일부가 소멸된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음

*** (보호관리계획)**

- 문화재보호법 등 국내법적으로 유효한 보호관리 체계가 제시되었으나, 각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보존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개선이 필요함. 최근 지자체에 가야 복원정비 관련 조직이 신설된 현황과 활동상황을 소개·부각하는 것도 좋을 듯 함

바. 검토 의견

- 이전 문화재위원회 보류 사유, 지적사항 반영 내역,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선정 가결시 : '19.7월까지 국문신청서를 완성하여 '19.7월말 등재 신청 대상 심의 ⇒ '19.9월 세계유산센터로 영문초안 송부 ⇒ '20.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영문 완성본을 세계유산센터로 제출
 ※ 2020년 신청, 2021년 등재 결정
 - 선정 부결시 : '19.4월까지 국문신청서를 완성하여 '19.7월말 등재 신청 후보 심의 ⇒ '19.12월 ~ '20.6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재신청서 보완 ⇒ '20.7월 등재 신청 대상 심의 ⇒ '20.9월 세계유산센터로 영문초안 송부 ⇒ '21.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영문 완성본을 세계유산센터로 제출
 ※ 2021년 신청, 2022년 등재 결정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출석 7명, 조건부 가결 5명, 부결 2명)
 - 역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팀 보강 및 관련 전문가 참여
 - 비교연구 재작성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에서의 구체적 근거 제시

붙임. 「가야고분군」 등재신청서(안) 설명자료(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보 고 사 항

2.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재신청 사전자문」 추진 보고

가. 보고사항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71항, 제122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공모하는 「등재신청 사전자문」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공모·시행하는 사전 자문 요청 과정(Upstream Advice, 이하 ‘사전자문’)에 응모하고자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접수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다. 사업개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2015년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개정시 ‘사전자문’을 공식적인 절차로 추가하였음

- *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잠정목록 개발 등 등재 추진 단계에서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에 사전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 자문은 세계유산 등재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제출 전에 진행하는 자문·협의·분석 등 자문기구(ICOMOS, IUCN)의 자문 일체를 말함
- * 사전 대비 없이 세계유산 평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 등재신청 과정에서 가장 이른 단계, 즉 당사국이 잠정목록을 준비하거나 수정하는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등재 잠재력이 있는 미래의 유산(잠정목록 기 등록 유산)도 대상으로 함

-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매년 2회(3.31 / 10.31) 접수하며, 등재신청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대상 유산을 선정하여 진행
 -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10개 유산이 선택되어 자문 과정 진행
 - 2018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연간 최대 10건 적용
 - 당사국이 신청하더라도 전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해당 과정을 위한 예산을 세계유산센터에서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선정되더라도 비용은 자체 부담 예상

라. 추진경과

(1) (~'19.3.11.) 지자체 대상 추진 희망 유산 접수

○ 1건 / 충청남도 (당진, 서산, 아산, 예산, 홍성)

가) 유산명(가칭) : 충남 내포 권역의 천주교 유적군 / 잠정목록 등록 준비 중

나) 구성유산 : 충남 서북부 바다에 접한 지역에 위치한 8개의 연속 유산

- 천주교 신앙의 '자발적 수용 및 확산기' 유산 : 18세기 중엽 ~ 19세기 초반
 - 한국에 천주교 신앙이 자발적으로 수용되어 정착·확산되어 가는 시기
 - ① 여사울 이존창 생가터 :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자 중 한 명인 이존창의 생가터
 - ② 솔외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 : 한국인 최초의 신부로 한국 천주교의 정착과 자립을 상징하는 김대건 신부 유적
 - ③ 신리 다블뤼 주교 유적 : 박해기 조선 최대의 교우촌이자 조선 제5대 교구장을 지낸 다블뤼 주교의 사목 활동 근거지

- '박해기' 유산 : 19세기 초반 ~ 20세기 후반
 - 한국 유교문화와의 충돌에 따른 조선정부의 금교령에 따라 천주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과 박해가 가해지는 시기
 - ④ 해미순교유적 : 해미읍성과 주변의 여섯골 처형지
 - ⑤ 홍성순교유적 : 조선시대 천주교인에 대한 고문·감금·처형이 이루어진 홍주읍성과 주변의 처형지, 생매장 터

- '신앙 자유화기' 유산 : 19세기 말
 -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천주교가 한국의 토착문화와 공존·융합을 이루며 독창적인 한국 천주교만의 종교문화를 꽃피운 시기
 - ⑥ 상홍리 공소 : 한옥의 건축기법을 창조적으로 변용하여 완벽하게 서양 바실리카식 성당을 구현해 낸 것으로 평가
 - ⑦ 함덕성당, ⑧ 공세리성당 : 근대 서양식 적벽돌조 고딕 건축기법에 한국적인 건축 요소와 환경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 한국 천주교의 토착화와 동서양 문화 융합을 상징하는 유산

다) 유산설명(요약)

- 근대기 천주교 수용을 통한 200여년의 장기 지속적인 동·서양 문화 교류와 독창적 문화 전통의 형성을 보여주는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적
- 한국 내에서 유일하게, 천주교의 수용에서부터 박해를 거쳐 신앙 자유화에 이르기까지 약 3세기에 걸친 특별하고 역동적인 역사와 독창적 문화 전통을 보여주는 유산들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음

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요약)

- (ii) 오랜 세월 서양의 천주교와 한국 문화가 어우러지고 절충되며 이루어 낸 문화교류의 중요한 증거임. 한국과 서양의 문화적 요소가 절충·혼합된 한옥목구조와 벽돌조고딕양식의 다양한 성당 건축물은 천주교를 매개로 동서양 건축기술의 교류와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vi) 한국 천주교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접목하여 천주교의 교리와 신앙을 가사체로 읊은 ‘천주가사’와, 천주교인의 장례 때 마치 노래하듯 죽은 자를 위해 올리는 위령 기도인 ‘연도’의 독특한 무형문화유산 전통을 창출해 냈음. 특히 연도는 동서문화융합의 뛰어난 사례로서 음악사와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내포권역에서는 주요 성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도의 전통이 잘 계승되고 있음

(2) ('19.3.12.) 추진 대상 선정 통보(문화재청 → 충남도)

마. 향후 계획

- ('19.3.27.) 영문 사전자문 요청서 제출 예정(문화재청 → 세계유산센터)
- ※ 세계유산센터 자문 대상 선정 일정 및 자문 진행 일정은 미정

바. 의결사항

- 원안 접수(출석 7명, 접수 7명)

3. 국가민속문화재 민속마을 제도개선 추진방향 보고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

가. 보고사항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서 추진중인 '국가민속문화재 민속마을 내 건축행위 제도개선' 사업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내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국가민속문화재 담당)에서 민속마을별 공청회 및 전체 워크숍 등을 통해 마을주민 현안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18.7~12월) 민속마을별 공청회 및 워크숍
 - ('19.1월) 문화재위원(세계, 민속 분과) 자문 : 하회·양동마을에 대해서 세계유산분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19.3월) 문화재전문위원(세계유산분과) 현지조사
- 이에 따라, 그간의 제도 개선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하고자 함

다. 개선방향(근대문화재과)

- 현행규정

규 정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2015.11.26)	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지침 (2018.6.21.)
목 적	실거주 건물 내부 생활불편 해소	전통적 생활환경 유지, 민속마을 연속성 확보
대 상	국가민속문화재 건물 내부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 등)	민속마을 내 나대지 (과거 건물이 있었던 대지)
허가자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문화재청장(문화재위원회 심의)
설치기준	건물내부 변경 가능, 자부담	고증가능한 건축물 복원가능, 자부담

○ 개선 주요내용

- 지정 당시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생활이 가능한 별도 증축 허용
- 무단증축 되어 있는 건조물의 원형 회복

※ 별도 증축 허용 시 문제점 및 보완대책 / '19.3.7. 현지조사 검토의견 반영

문 제 점	보완대책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의 훼손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증축 시 반드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경관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훼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재기준인 '조선초기 특징인 촌락의 형태를 유지', '양반과 평민가옥들의 전체적 배치와 개별적 배치의 조화'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만 신청 가능하며, 건폐율이 20%~40%로 제한되어 있어 난립 여지 없음 • 또한 지정 당시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부속채 성격의 전통가옥 형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 경관개선
무단증축된 건축물의 처리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증축 접수 시 무단 증축된 부분 철거조건
정책의 실효성 담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용역 등을 통해 실효성 검토 예정

○ 기대효과

- 마을주민 유입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민속제례, 전통행사 등 전승
- 공가 발생 예방으로 건조물 보존관리 예산절감
- 기존 부적합건축물(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등) 철거 유도 및 경관에 어울리는 증축건물로 계도
- 별도증축 시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마을경관 개선
- 생활환경 개선으로 문화재 활용(고택체험) 촉진 등 문화향유 대국민 서비스 개선 기대

○ 향후 추진계획

- '19. 4월 ~ 5월 : 정책안에 대한 민속마을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19. 6월 ~ 9월 : 세부 세칙 및 자료보완
- '19. 10월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상정 계획(세계유산분과, 민속분과)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민속마을 내 주거환경 열악으로 주민이탈 가속, 이에 따른 공동화 우려 및 제례 등 전승 곤란, 또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무단증축으로 역사문화경관 훼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논의 필요
 - ▶ 주민 유·출입 현황
 - 안동 하회마을(마을주민: '12년 243명/'18년 222명, ↓8%감소)
 - 경주 양동마을(마을주민: '12년 338명/'18년 273명, ↓20%감소)
 - ▶ 공가발생 현황
 - 안동 하회마을 51동(12%), 경주 양동마을 15동(4%)

마. 추진경과

(1) 의견 수렴 : 근대문화재과

- '18. 7. ~ 10. : 민속마을별 공청회 개최
- '18. 12. 12. : 전체 민속마을 워크숍

구 분	건의사항
규제완화	· 증축허용 요청, 내부공간 현대식 대폭 개선, 신축 시 국고지원 요청
공동체 소멸 위기	· 인구 감소로 마을 존립 문제, 지원 대책 등 마련하여 유입방안 마련 필요
관리인력 필요	· 운영인력, 안전관리 등 지원 필요
초가정비 현실화	· 현실에 맞게 초가규모 증축 필요, 초가 차양설치 등 현실화 방안 마련

(2) 자문회의 : 문화재위원000(세계), 000·000·000(민속) / '19. 1. 29.

[문화재위원 000]

- 별동의 증축을 통하여, 기존 주택의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함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면해주는 증축 허용 기준의 규모는 5칸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면적단위(m²)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하회·양동의 두 마을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분과 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문화재위원 000]

- 국가민속문화재 내에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증축을 근본적으로 허용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단 세부내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함

[문화재위원 000]

- 부지 내 별동증축 신설은 동의함
- 방안은 향후에 더 검토한 후에 내용을 수정한다.(초가 5칸 등)

[문화재위원 000]

- 민속마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긍정적인
- 문화재의 진정성 측면에서 문화재의 원형(살림집의 경우 배치, Human Scale 등)을 고려하였으면 함
- 5칸의 경우는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고 기존의 주택과 조화를 고려했으면 함
- 증축에 관한 세칙을 준비하면 좋겠음
- 근본적인 해결책과 현재의 해결책 등을 고려했으면 함

(3) 현지조사 : 문화재전문위원 000·000(세계) / '19. 3. 7.

[문화재위원 000]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이탈 방지 및 경관 개선 등 민속마을 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함. 이는 민속마을이 유형적 측면만이 아니라 무형적 측면에서도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임. 농기계창고 및 설비시설은 공동구 추진 등으로 마을단위로 해결하면서 경관 및 거주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별 가옥단위의 증축 허용에 대해서는 실효성 확인 과정이 필요함
- 본 증축허용에 관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증축이 확산되거나,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양성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전체 마을의 경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가능하다면 개별 가옥단위의 접근보다는 각 민속마을에 대한 종합정비계획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는 모든 행위는 가역적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함
-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으로 등재된 세계유산으로서, 증축에 대해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음. 세계유산에 등재된 민속마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행위는 세계유산팀 및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받기 바람.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세계유산센터의 확인이 필요함
- 특히 본 유산은 등재 시 등재기준(iii)의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대표적인 씨족마을의 예로서, 조선시대 초기의 특징인 촌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및 등재기준(iv)의 “~양반과 평민 가옥들의 전체적인 배치와 개별적 배치의 조화는 조선왕조의 힘과 영향력이 문학과 철학적 전통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적 전통에도 배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 바, 유산의 시대성에 기반한 등재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완전성·진정성 측면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 이행되어야 함
-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기존 계획에 대한 검토와 이행이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예상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임

[문화재위원 000]

- 본 유산은 한국의 씨족마을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씨족마을의 구성요소(종가, 살림집, 정사와 정자, 서원과 서당, 농경지, 자연경관)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무형(정신적)유산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음. 특히 가옥과 마을 배치의 우수성을 주목받았음. 그러나 이후의 보수복원, 활용을 위한 변경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재료와 기술, 배치, 건축물의 우수성을 약화시켜왔음을 지적받았음. 이는 곧 문화재 내 증축 허용에 관한 제도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증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세계유산 목록 등재 당시 제시되었던 등재기준, 완전성과 진정성의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가옥의 배치, 건축기법, 재료 등이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할 것임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보호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정기보고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증축 허용의 정도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증축행위가 세계유산의 OUV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사전심의 및 검토, 행정에서의 모니터링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증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유산센터와 공유(공개)해야 할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 한국의 역사마을은 씨족마을, 읍성마을 등 다양한 유형이 조재하고 각각의 마을들 사이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증축허용의 정도가 각각의 역사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역사마을 별 개별적인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마을별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증축 등 건축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률적인 제도의 적용으로 다양성과 가치가 획일화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바. 의결사항

- 원안 접수(출석 7명, 접수 7명)